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발의】



2020.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 252호로 2020년 8월 21일 정선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위 ‘근로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려움이 있는 바, 사실상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보호를 받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등 법의 사각 지대에 놓이고 있기에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을 위한 적용대상 명시(안 제4조)

다.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라. 프리랜서 활동 지원 및 특별 재정지원 사업(안 제8조 ~ 제9조)

마.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결과(2020.8.21. ~ 8.26.):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 현대사회는 직업이 분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 형태가 파생되는 반면, 법적 보호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에 의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음.
- 프리랜서는 특정한 소속 없이 사용자의 관리·감독 및 지시에서 자유롭게 일한다는 특성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으로 프리랜서를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으로 정함.
- 안 제6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며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프리랜서의 노동환경 실태 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법률 상담 지원, 노동관계법령 교육, 복지 및 지원 시설의 설치 운영 등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 안 제9조에서는 재난의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시 환수할 수 있음을 규정함.

###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조직 구조의 유연화, 고용형태의 다변화의 영향으로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안정된 근로여건이 보장되지 않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프리랜서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근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근로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금체불과 불법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프리랜서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 하에서 현행 법 체계 속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 상담, 노동관계법령의 교육,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은 바람직함.
- 특히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실직 등을 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지원금 지원 대책도 중요함.

- 검토 결과, 현재 프리랜서는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기본적인 권익 보장이 미흡한 상황인 바, 본 조례안을 통하여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대한민국헌법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③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2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나. 삭제 <2011. 1. 24.>
  - 다. 삭제 <2015. 4. 14.>
  - 라.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 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